

기금관리규정



사단
법인 **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**

(사)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기금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학회 적립금인 기금의 관리 및 기금 잉여금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본 기금은 본 학회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,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하며, 재무이사가 관리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에 의해 적립된다.

1.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잉여금의 편입
2.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재산

제4조(잉여금의 처리) 기금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잉여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.

1. 기금으로의 편입
2. 당해연도 학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

제5조(기금의 사용제한) 본 기금으로 편입된 적립금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